교직원 청렴주의보 발령(4차)

(감사실 / 2021. 7. 28.)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부패·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주의·당부함으로써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발령기간**: 2021.8.2.(월)~8.20.(금)

☐ **주요내용**

직무관련자 향응 제공 또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 금품 등 제공 또는 약속 금지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

* "금품 등"에는 금전 뿐 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포함

- 교직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수금지 금품 제공(약속) 금지

➲ **"편의 제공" 예시**

직무관련자가 UST 교직원을 위하여 자신의 소속 직장 직원 할인가로 콘도 예약을 해준 경우,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서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금품등 수수에 해당되어 행동강령 위반임

(국내외)여행, 골프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주의

-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인 접촉 제한

➲ "사적인 접촉" 예시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기타) 공직기강 주의사항

-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갑질 사례 발생
- 업무공백·해태 등 무책임 및 소극행정 발생
- 복무·보안관리 소홀 등 기강해이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 UST 행동강령 위반 상담 및 신고처 : 행동강령책임관 김 익 수 (042-865-2311)